【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안내】

- ① **산업재해 발생 기록·보존**(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2항, 시행규칙 제72조)
 - 대상: 모든 산업재해(3일 미만의 휴업재해도 포함)
 - 내용: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개요, 근로자 인적사항, 재해 발생 일시, 장소, 원인, 과정,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·보존 (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한 요양신청서 사본 대체 가능)
- [2] **산업재해 발생 보고**(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, 시행규칙 제73조, 별지제30호)
 - 대상: 3일 이상 휴업재해(재해일은 미포함, 법정 휴무 공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)
 - 내용: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,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전화, 팩스 등으로 보고하고,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
- 위반시: 일반재해 미보고 1차 700 / 2차 1,000 / 3차 1,500만 원, 거짓보고 1,500만 원 중대재해 미보고 3,000만 원, 거짓보고 3,000만 원
- ③ 산업재해 은폐 행위 금지(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)
 - 내용: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됨
 - ※ 출근 강요로 3일 이상 휴업을 은폐, 공상처리 후 산재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, 산재은폐 교사·공모 등
 - 위반시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